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외 체포 시 구속영장 청구시한 기산점 완화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93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2.
3. 회 부 일 : 2025.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국까지의 이송 및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물리적으로 그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고, 설혹 가능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조사 등이 매우 곤란해져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2 및 제200조의4).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피의자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¹⁾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가 아니라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기산점을 완화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 ④ (생략)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逮捕한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第201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⑤ ----- -----체포한 때부터(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 -----.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檢事は 管轄 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	① ----- ----- ----- ----- -----

1) 여기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의 체포란 타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여 우리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형사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① 공해상 또는 국제 공역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항공기에서의 체포(기국주의)나, ② 범죄인 인도 또는 강제송환 절차에 따라 타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은 후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항공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求로 管轄地 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u>체포한 때부터</u>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 ----- ----- -----체포한 때부터(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1) 현행 제200조의2²⁾에 따르면,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현행법 제200조³⁾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 이 경우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

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시간 이내에’ 현행법 제201조4)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함(제200조의2제5항).

(2) 또한,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 우려가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현행법 제200조의35)에 따라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함(제200조의46)).

-
- 4)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뿐만 아니라, 현행범인⁷⁾은 현행법 제212조⁸⁾에 따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 제200조의2제5항은 검사·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함.

이처럼 현행법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것은 ‘체포영장’의 효력에 따른 인신구속 또는 ‘영장 없는’ 인신구속의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헌법 제12조⁹⁾에 따른 신체의

6)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8)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9)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을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피의자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대한민국까지 이송하고 입국심사 등을 실시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¹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체포 후 48시간’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¹¹⁾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0)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11년 이른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 5인의 국내 이송을 들 수 있음. 당시 청해부대(해군)는 이들을 아라비아해 공해상에서 체포한 후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이송하기까지 약 9일이라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음.

다만, 이 사건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피의자를 체포한 사례가 아니라 ‘해군’이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한 사례로서, 같은 법 제213조의2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기한인 ‘체포 후 48시간’은 국내 이송 후 해양경찰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기산되었음(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따라서 당시에는 구속영장 청구기간 도과가 실제 문제되지는 않았으나, 국외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국내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만일, 당시 공해상에서의 체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개정안이 우려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1) 김영준, “국외도피 범죄자의 체포시한 및 조사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 한계성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25권 제1호, 2025. 3. 등

이에 개정안은 피의자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가 아니라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해외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현실적·실무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피의자에게도 영장청구 전에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이후 입국심사가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만큼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영장주의 원칙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현행법이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체포 후 48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며, 특히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의 경우에는 ‘영장 없는’ 인신구속을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개정안은 국외 등 체포의 경우에서 피의자의 인신구속 기간을 현행 ‘48시간’보다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 및 영장주의 원칙 위배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봄.

둘째, 개정안은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를 구속영장 청구시한의 기산

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다소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인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입국심사 완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피의자의 국내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질이나 관계 당국의 실무적 문제에 따른 입국심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인신구속 기간이 크게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입국심사 등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인신구속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화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한 경우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영장주의 원칙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외 체포 후 국내 이송 등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을 ‘48시간’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나,¹²⁾ 국내 이송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인신구속 기간의 총합에 별도의 제한을 명시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아울러, 거리와 교통 불편의 정도에 따라 법원이 소송행위의 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제67조¹³⁾ 및 「형사소송규칙」 제44

12) 김영준, “국외도피 범죄자의 체포시한 및 조사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 한계성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25권 제1호, 2025. 3.

13) 「형사소송법」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

조¹⁴⁾ 등 입법례를 참고하여, 구속영장 청구기한의 기산점 자체를 일률적으로 늦추는 것이 아니라 국외 이송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 구속영장 청구기한의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¹⁵⁾ 피의자 인신구속의 장기화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적 사법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048

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4) 「형사소송규칙」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15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30일

15) 최민영, “원격지에서의 체포와 체포시한 연장의 문제”,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2015. 10.